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견수렴·조정 의제 발굴·기획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소통기획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고(4급1, 5급1, 6급2), 교육정책 공론화 추진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숙의공론화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교육과정 조사·협력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장학관 또는 4급 1명, 연구사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교육과정 개정 인력 1명(연구사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분야별 과제검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참여지원과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원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반영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를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교육과정조사협력과·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운영지원과”로 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교육연구센터”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국가적·사회적 요구 등 범교과”를 “범교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9호와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7호) 중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미래지향”을 “미래지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와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교육과정 정책의 기획·총괄
8. 국가교육과정 국가적·사회적 요구 등 대응·관리
1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3. 국가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참여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참여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10호) 중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는 “소셜 미디어”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는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는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는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는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중전의 제20호) 중 “민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은 “민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①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실시
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3.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4.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

성 · 운영

6.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1.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12. 국가교육과정 후속지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9조) 제2항 후단 중 “3명”을 “6명”으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교육소통기획과) ① 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 · 분석
2. 국민의견 수렴 · 조정 대상이 되는 정책의제의 발굴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기본계획 수립
4.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5.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 운영
6. 국민의견 수렴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민의견 수렴 · 조정 관련 조정안 작성
9. 대국민 보고회 기획 및 운영

10.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 및 백서 발간
 11. 국민의견 수렴·조정 결과 이행사항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13.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숙의공론화과) ①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운영
2. 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 수립
3.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법령 및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숙의공론화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6. 숙의공론화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7. 숙의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숙의토론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9. 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공론화 관련 포럼·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페이지 관리·운영
12. 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장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같은 장 “제10조(한시정원)”를 삭제한다.
제4장 평가대상조직을 신설하고 같은 장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중 “(제9조제1항 관련)”을 “(제12조제1항 관련)”으로, 총계 “32”를 “50”로, 특정직 계 및 장학관·4급일반직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1”을 각각 “14”로, 일반직 계 “18”을 “33”로, 4급 이하 “17”을 “33”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u>교육발 전총괄과 · 교육과정정책과 · 참 여지원과</u> 를 둔다.	제5조(하부조직) ----- <u>교육발 전총괄과 · 교육과정정책과 · 교 육과정조사협력과 · 교육소통기 획과 · 숙의공론화과 · 운영지원 과</u> ---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① (생 략) ②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교육연구센터</u> 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9. ~ 15. (생략)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① (현행 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u>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u> ----- ----- 9. ~ 15.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① (생 략) 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u><신 설></u> 1. ~ 5. (생략) 6. <u>국가적·사회적 요구 등 범교 과 학습주제</u> 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① (현행 과 같음) ② ----- -----. 1. <u>국가교육과정 정책의 기획· 총괄</u>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7. <u>범교과</u> ----- -----

<u><신 설></u> 7. <u>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미래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u> 8. (생략) 9. <u>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실시</u> 10. <u>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u> 11. <u>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u> 12. <u>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3. (생략) <u><신 설></u> 14. <u>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u>	8. <u>국가교육과정 국가적·사회적 요구 등 대응관리</u> 9. <u>미래지향</u> ----- ----- 10. (현행 제8호와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11. <u>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12. (현행 제13호와 같음) 13. <u>국가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u> <u><삭 제></u>
--	--

15.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삭 제>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① 교
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
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계획 수
립·실시

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3.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4.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
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국
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6.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
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 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1.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12. 국가교육과정 후속지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소통기획과) ① 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2. 국민의견 수렴·조정 대상이 되는 정책의제의 발굴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기본계획 수립

4.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5.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6. 국민의견 수렴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신 설>

- 7.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 8.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조정안 작성
 - 9. 대국민 보고회 기획 및 운영
 - 10.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 및 백서 발간
 - 11. 국민의견 수렴·조정 결과
이행사항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12.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13.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10조(숙의공론화과) ① 숙의
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②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2. 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3.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법령
및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숙의공론화 절차 운영에 관한

제8조(참여지원과) ① 참여지원과
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견 수립·조정 대상이
되는 정책의제의 발굴

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립·조정 절차의 운영

사항

6. 숙의공론화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7. 숙의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숙의토론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

9. 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
에 관한 사항

10. 공론화 관련 포럼·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
페이지 관리·운영

12. 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
데이터 관리

1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u>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u> <u>4.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u> <u>5. ~ 9. (생략)</u> <u>10.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관리·운영</u> <u>11.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u> <u>12. ~ 18. (생략)</u> <u>19.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u> <u>20. 민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u> 제3장 공무원의 정원 <u>제9조</u>(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	<u>1. ~ 5.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u> <u>6. 소셜 미디어</u>----- <삭제> <u>7. ~ 13. (현행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u> <삭제> <u>14. 민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u> 제3장 공무원의 정원 <u>제12조</u>(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장 한시정원

제10조(한시정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의견 수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둔다.

<신설>

<신설>

 --- 6명 -----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제13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

표 2와 같다.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별표 3]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교육과정조사협력과	3명 (장학관 또는 4급 1명, 연구사 1명, 9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교육소통기획과	4명 (4급1, 5급1, 6급2)	2028년 9월 30일까지
3. 숙의공론화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신·구정원대비표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별표 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제9조제1항 관련)	(제12조제1항 관련)	
총 계	<u>32</u>	<u>50</u>	+18
.	.	.	
.	.	.	
특정직 계	<u>11</u>	<u>14</u>	+3
장학관·4급일반직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u>11</u>	<u>14</u>	+3
일반직 계	<u>18</u>	<u>33</u>	+15
.	.	.	
4급 이하	<u>17</u>	<u>32</u>	+15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별표 2]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0조 관련)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